동물병원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806-3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정의

제 2 장 동물병원

제 4 조 원장
제 5 조 기능
제 6 조 조직
제 7 조 업무시간 806-4

제 3 장 진료 및 장제

제 8 조 진료 및 장제의뢰
제 9 조 필요한 사항의 지시
제10 조 외부 말의 진료 및 장제
제11 조 관계서류의 보존
제12 조 진료 및 장제비
제13 조 수술서약서

제 4 장 개업수의 및 개업장제

제14 조 개업수의사 및 개업장제사
제14 조의2 재승인 및 재승인의 제한
제14 조의3 고용수의사 및 고용장제사 등 806-5
제14 조의4 연령제한
제15 조 외래수의사 및 외래장제사
제16 조 시설의 임대

제17조 준수의무
제18조 개업수의사 및 개업장제사에 대한 제재처분 806-6
제18조의2 제재처분의 종류
제18조의3 재심청구
제18조의4 재심의
제19조 개업승인 취소
제20조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806-7
제21조 경고
제22조 고용수의사 및 고용장제사에 대한 제재

제5장 검역 및 방역

제23조 검역 및 예방접종
제24조 입사의 제한
제25조 격리 및 이동제한
제26조 정기 및 임시검사 806-8
제27조 조치 및 명령
제28조 폐사마의 처리
제29조 마주 또는 조교사의 의무

제6장 동물병원운영위원회

제30조 설치
제31조 구성
제32조 기능
제33조 소집 및 의결

부칙 806-9

동 물 병 원 운 영 규 정

제 정 1992. 4.29. 제12차개정 2013. 5.26.
제 5 차개정 1996. 4.20. 제13차개정 2014. 8.13.
제 6 차개정 2001.12.19. 제14차개정 2014.11.21.
제 7 차개정 2003.12.17. 제15차개정 2015. 1.19.
제 8 차개정 2004. 3.26. 제16차개정 2016. 1.29.
제 9 차개정 2006. 3.15. 제17차개정 2016. 3.16.
제10차개정 2007. 4.19. 제18차개정 2017. 4.11.
제11차개정 2009. 3. 8. 제19차개정 2018. 9.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동물병원 및 말의 보건·위생관리 및 개업수의·개업장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17.>

제2조(적용범위) 한국마사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동물병원 운영, 말의 보건·위생관리 및 개업수의·개업장제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3.12.17.>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17.>

1. "동물병원"이란 말의 진료·장제·검역 및 방역과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가 운영하는 말산업육성본부와 부산경남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 동물병원을 말한다. <개정 2003.12.17., 2006.3.15., 2009.3.8., 2013.5.26., 2014.11.21., 2018.9.21.>
2. "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정하는 가축전염병중 말과 관계되는 질병과 회장이 지정하는 전염성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7.4.11.>
3. "개업수의사"란 본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 지역안에서 상시적으로 말에 대한 진료를 행하는 수의사를 말한다. <개정 2003.12.17.>
4. "고용수의사"란 개업수의사에 의해 고용된 수의사를 말한다. <개정 2004.3.26.>
5. "개업장제사"란 「경주마장제사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장제사로서 본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 지역 안에서 상시적으로 말에 대한 장제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17., 2017.4.11.>
6. "고용장제사"란 개업장제사에 의해 고용된 장제사를 말한다. <개정 2003.12.17.>

제2장 동물병원

제4조(원장) ① 본회의 각 동물병원에는 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두어 그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토록 한다. <개정 2003.12.17., 2006.3.15.>

② 원장은 동물병원이 소속된 부서의 부서장(원장 또는 담당)으로 보임하되, 부서장이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수의사 중에서 상위직급자로 한다. <신설 2006.3.15., 개정 2017.4.11.>

제5조(기능) 동물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12.17.>

1. 말의 진료 및 장제에 관한 사항
2.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 및 방역에 관한 사항
3. 개업수의·개업장제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2.17.>
4. 말보건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1994.10.19., 개정 2009.3.8.>
5. 말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16.>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본조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16.3.16.]

제6조(조직) 제5조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본회 동물병원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17., 2007.4.19.>

1. 말산업육성본부 말보건원, 제주목장, 장수목

장 <개정 2006.3.15., 2009.3.8., 2013.5.26., 2014.11.21., 2016.1.29., 2017.4.11., 2018.9.21.>
2. 부산경남지역본부 경주자원관리부 <개정 2006.3.15., 2009.3.8., 2013.5.26., 2017.4.11.>
3. 제주지역본부 경주자원관리부 <개정 2006.3.15., 2009.3.8., 2013.5.26., 2016.1.29., 2017.4.11., 2018.9.21.>

제7조(업무시간) 동물병원의 업무시간은 본회의 근무시간에 준하되,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단축·변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3.16.]

제3장 진료 및 장제

제8조(진료 및 장제의뢰) ① 본회의 시설 내에서 관리되는 말의 진료 또는 장제는 제1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진료 또는 장제를 의뢰하고자 하는 말의 마주 또는 조교사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 진료신청서 또는 장제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가 급환의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 또는 장제를 실시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3.16.>
③ 본회의 시설이외에서 관리되는 말을 본회 동물병원에서 진료받게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3.10.19., 2014.11.21.>

제9조(필요한 사항의 지시) 원장은 진료 또는 장제 의뢰된 말의 마주 또는 조교사에 대하여 경마시행 및 말 보건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94.10.19., 2009.3.8.>

제10조(외부 말의 진료 및 장제) 원장은 외부 말에 대한 진료 또는 장제를 위하여 필요시 본회 동물병원 소속의 수의사 또는 장제사를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관계서류의 보존) 본회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관계서류의 보존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부 : 1년 <개정 2014.11.21.>
2. 장제부 : 3년
3. 검안부 : 1년 <개정 1993.7.5., 2014.11.21.>
4. 진단서 : 3년
5. 방역관계서류 : 3년
6. 처방전 : 3년
7. 각종 대외증명서 : 3년
8. 수술서약서 : 2년

제12조(진료 및 장제비) ① 말의 진료 또는 장제에 따른 비용은 원장이 당해 말의 마주 또는 조교사에게 월별로 일괄 징수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징수할 수 있다.
② 진료비 및 장제비의 수가 및 징수기준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12.19.>

제13조(수술서약서) 원장은 환마를 수술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마주 또는 조교사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술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개정 1993.7.5., 2014.11.21.>

제4장 개업수의 및 개업장제

제14조(개업수의사 및 개업장제사) ①본회 지역 안에서 상시적으로 말에 대한 진료·장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유효기간은 5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03.12.17., 2014.11.21.>
② 개업수의사는 수의사면허 소지자로서 말 진료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개업장제사는 「경주마장제사 등록규정」에 의해 등록된 1급 또는 2급 경력 5년이상인 장제사로 하며, 개업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4.3.26., 2014.8.13., 2014.11.21., 2017.4.11.>
③ 삭 제 <2014.11.21.>
④ 삭 제 <2014.11.21.>
⑤ 삭 제 <2016.3.16.>
⑥ 삭 제 <2016.3.16.>

제14조의2(재승인 및 재승인의 제한) ① 개업수의사 또는 개업장제사가 제14조제1항의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본회 지역 안에서 계속 진료 또는 장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전까지 본회

에 재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는 제1항의 재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개업수의사 또는 개업장제사가 승인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내(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승인유효기간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4조제5항의 재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통산 2회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2. 통산 1회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와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3. 통산 6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는 이를 참작하여 재승인할 수 있다.

1. 공정경마 기여
2. 경주마 진료 또는 장제기술 발전과 보급
3. 경주마자원 보호

④ 제1항에 따른 재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제17조에 따른 준수의무 위반 여부 및 제18조에 따른 제재처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단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1.]

[제14조제6항을 제14조의2제4항으로 이동 2016.3.16.]

제14조의3(고용수의사 및 고용장제사 등) ① 개업수의사 또는 개업장제사는 본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의사 또는 장제사를 고용할 수 있다.

② 개업수의사 또는 개업장제사가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2014.11.21., 2016.3.16.>

③ 고용수의사 또는 고용장제사가 말의 진료 및 장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를 고용한 개업수의사 또는 개업장제사가 관리 책임을 진다.

④ 고용수의사 및 고용장제사의 승인 및 그 취소, 제재처분, 운영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26.]

[종전 제14조의2에서 이동 2014.11.21.]

제14조의4(연령제한) ① 수의사 개업 및 고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수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만 63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② 장제사 개업 및 고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장제사 국가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만 63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3.16.]

제15조(외래수의사 및 외래장제사) ①본회 소속 수의사·본회 소속 장제사·개업수의사·고용수의사·개업장제사 및 고용장제사가 아닌 수의사 또는 장제사(이하 "외래수의사" 또는 "외래장제사"라 한다)가 본회 지역 내에서 관리중인 말에 대해 일시적으로 진료·장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진료·장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7., 2004.3.26., 2014.8.13., 2014.11.21.>

② 제1항에 따라 본회 지역내에서 외래수의사 또는 외래장제사가 진료 또는 장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일 업무 종료전까지 진료 또는 장제 내역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3.26., 개정 2014.11.21.>

③ 외래수의사 및 외래장제사는 진료나 장제에 따른 비용을 의뢰자에게 직접 청구하고 정산한다. <신설 2004.3.26.>

제16조(시설의 임대) ① 개업수의사 및 개업장제사(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본회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3.12.17., 2006.3.15.>

② 진료 및 장제시설 신규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임대계약 해지 후 재임대에 관한 사항 포함)에 관한 사항은 동물병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이외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관리부서에서 처리한다. <신설 2006.3.15., 개정 2009.3.8.>

제17조(준수의무) 개업수의사·고용수의사·개업장제사·고용장제사·외래수의사 및 외래장제사는 각각 본회의 제 규정, 개별승인조건 및 임대차계약 조건과 말의 진료·장제에 대한 본회의

업무지침이나 정당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7., 2004.3.26.>

제18조(개업수의사 및 개업장제사에 대한 제재처분) ① 개업수의사 및 개업장제사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항제3호의 경고는 원장이 부과할 수 있다.

②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부정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 및 사유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재대상자의 인적사항
2. 제재사유
3. 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4. 그 밖에 제재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재대상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1.]

제18조의2(제재처분의 종류) ① 개업수의사 및 개업장제사 대한 제재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17., 2014.11.21.>

1. 개업승인 취소 <개정 2014.11.21.>
2.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개정 2014.11.21.>
3. 경고

② 제1항에 따른 제재별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17.>

1. 개업승인의 취소는 본회 내에서의 개업승인을 취소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2.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중 효력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개정 2006.3.15., 2014.11.21.>
   가. 영업정지 : 처분이 내려진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개업수의사·개업장제사에 대하여 본회 내에서 진료업무·장제업무를 금지한다.
   나. 업무정지 : 처분이 내려진 해당 개업수의사·개업장제사에 대하여 본회 내에서 진료업무·장제업무를 금지한다. <개정 2014.11.21.>
3. 경고는 서면으로 훈계한다.

[제목개정 2014.11.21.]

제18조의3(재심청구) ① 제재대상자가 제재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에 대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원처분에 따라야 하며 재심청구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동물병원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1.]

제18조의4(재심의) ① 동물병원운영위원회는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재심의에 부의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② 재심에 따른 제재처분은 원처분보다 가중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제재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심에 따른 제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다만 재심에 따른 제재처분이 감경된 경우 재심처분 효력발생일까지 원처분의 효력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동물병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심의 요구가 기각되거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제재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1.]

제19조(개업승인 취소) 개업수의사 또는 개업장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업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개업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7.>

1. 해당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될 때
2. 한국마사회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경마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
3. 삭 제 <2003.12.17.>

4. 영업정지·업무정지처분을 받고 1년이내 에 동일한 제재처분을 받게 된 때 <개정 2003.12.17.>
5. 최초 개업승인 후 3회째 영업정지·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신설 2003.12.17.>
6. 제21조 및 제22조의 제재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본회의 위상을 심히 훼손한 경우 <신설 2003.12.17.>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4.11.21.]

제20조(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개업수의사 또는 개업장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본회내에서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7.>

1. 개업수의사·개업장제사가 본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고 이를 시정조치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3.12.17.>
2. 본회의 사전승인없이 1개월 이상 영업 또는 업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2003.12.17.>
3. 개업수의사가 금지약물과 관련한 준수의무 위반으로 당해 진료마의 약물검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을때 <개정 2003.12.17.>
4. 개업장제사가 「경마시행규정」 제58조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03.12.17., 개정 2017.4.11.>
5. 경주마의 진료비 또는 장제비를 고의로 부당·허위 청구한 경우 <신설 2003.12.17.>
6. 해당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동물 진료업이 정지된 경우 <신설 2003.12.17.>
7. 개업수의사·개업장제사가 관련 법규 및 준수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06.3.15.>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4.11.21.]

제21조(경고) 개업수의사 또는 개업장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경고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3.12.17., 2014.11.21.>

1. 제17조의 준수사항 중 본회의 업무지침이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12.17., 2006.3.15.>
2. 삭 제 <2003.12.17.>
3. 제21조를 위반하였으나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 <신설 2003.12.17.>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4.11.21.]

제22조(고용수의사 및 고용장제사에 대한 제재)

① 고용수의사 또는 고용장제사가 제17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각 사안에 따라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하여 제재처분한다. <개정 2003.12.17., 2004.3.26., 2014.11.21.>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수의사 또는 고용장제사가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를 고용한 개업수의사 또는 개업장제사는 관리책임 정도에 따라 연대하여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04.3.26.>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4.11.21.]

제5장 검역 및 방역

제23조(검역 및 예방접종) ① 본회의 마사에 입사하려고 하는 말은 본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검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1.12.19.>

1. 국가검역을 필하고 즉시 입사한 외국산 말
2. 승마대회 출전을 위해 본회 승용마사에 일시적으로 입사하려는 말과 수술 등 응급을 요하는 질병으로 입사하려는 말
3. 그 밖에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11.21.>

②본회 지역 안에서 관리중인 말은 반드시 본회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3.7.5.>

제24조(입사의 제한) 원장은 제23조제1항의 검역결과 전염병에 이환되었다고 진단되거나 의심되는 말의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1.>

제25조(격리 및 이동제한) 원장은 전염병의 전

파 및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주 또는 조교사에게 당해 말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7.5.>

제26조(정기 및 임시검사) ① 본회 지역 안에서 관리중인 말은 본회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전염병 검진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이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7.5.>

제27조(조치 및 명령) 원장은 전염병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당해 말에 대해 검사·주사·약욕·투약 및 소독실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마주 또는 조교사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폐사마의 처리) ① 마주는 소유한 말이 본회 지역 안에서 폐사한 때에는 사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마주가 사체의 처리를 본회에 의뢰할 때에는 본회가 사체를 처리한다.

③ 전염성 질환으로 폐사되었다고 의심되는 사체에 대해서는 마주의 요청이 없어도 본회가 이를 처리한다.

제29조(마주 또는 조교사의 의무) ① 해당 말의 마주 또는 조교사는 제23조·제25조 및 제27조에 의한 조치 또는 명령의 실시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조교사는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말 및 마사주위의 위생관리에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③ 조교사는 관리하는 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전염병에 걸렸다고 의심이 될 경우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7.5.>

제6장 동물병원운영위원회 <개정 2014.11.21.>

제30조(설치) 동물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말산업육성본부, 부산경남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에 동물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12.17., 2006.3.15., 2009.3.8., 2013.5.26., 2014.11.21., 2017.4.11.>

제3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3.15.>

② 말산업육성본부의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며, 부산경남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에서 운영되는 위원회는 이를 준용하여 자체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3.12.17., 2006.3.15., 2009.3.8., 2013.5.26., 2014.11.21., 2017.4.11.>

1. 위원장 : 1인(말산업육성본부장) <개정 2006.3.15., 2009.3.8., 2014.11.21., 2017.4.11.>
2. 위원 : 5인(말보건원장, 경마기획처장, 서울경마처장, 심판처장, 총무인사처장) <개정 2006.3.15., 2009.3.8., 2013.5.26., 2015.1.19., 2017.4.11., 2018.9.21.>
3. 간사: 1인(보건총괄담당) <개정 2006.3.15., 2009.3.8., 2016.1.29.>

제3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03.12.17.>

1. 수의사 및 장제사의 개업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06.3.15., 2009.3.8.>
2. 개업수의사 및 개업장제사의 재승인 및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3.8., 2014.11.21.>
3. 고용수의사 및 고용장제사의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1.21.>
4. 진료 및 장제시설 신규 임차신청 심사(임대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된 경우 재임대에 관한 사항 포함)에 관한 사항 <개정 2009.3.8.>
5. 장제사 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동물병원 운영과 개업수의 및 개업장제의 제도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04.3.26.>

제33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의안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21.>
⑤ 위원회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안건 등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1994.10.19.>
⑦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사항에 대하여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위한 제척 및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11.21.>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제사등록규정의 개정) 장제사등록규정 제8조 제1항의 "동물병원운영규정 제23조의"를 "동물병원운영규정 제27조의"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업 재승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이미 개업 승인을 받은 개업수의사와 개업 장제사에 대한 개정규정 제14조제1항의 개업 재승인을 위한 기간 기산은 개정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2004.3.26.>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11.>

이 규정은 200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3.8.>

이 규정은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1.>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9.>

이 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2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29.>

이 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1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3.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장제사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가자격 3급 취득할 경우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고 개업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칙 <2017.4.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마시행규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제 개편에 따른 직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6조, 제30조,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9.21.>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5월 2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3.12.17., 2009.3.8.>

진 료 신 청 서

접수번호					
등록마번					
마 명					
관 리 조		나 이		성 별	
출주예정 사 항					

※ 주의 : 모든 진료마는 진료일로부터 10일간 출주가 금지됩니다.

상기 말의 진료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조교사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동 물 병 원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3.12.17., 2009.3.8.>

장 제 신 청 서

등록번호: 마 명 : (소속 :)

위 말의(장제·정타·삭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조교사 또는 대리인 (인)

장 제 내 용	
특 기 사 항	담 당 장 제 사

장 제 소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3.12.17., 2009.3.8.>

말 수술 서약서

마적사항	마 번		마 명			
	성 별		연 령	세	모 색	
	마 주		마주주소			
	관 리 자		관리자 주소			

수술내용	수 술 명	
	수 술 내 용	
	수술대상부위	
	수술소요시간	
	마 취 방 법	
	비 고	

상기 수술에 대한 귀 원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여 수술에 동의하며, 수술 및 치료에 있어 귀원의 지시에 따를 것과 수술중 또는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사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마주(조교사)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동물병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3.12.17., 2014.8.13., 2014.11.21.>

개업수의사(개업장제사) 승인 신청서(제14조 관련)

신 청 인 인 적 사 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수의사면허번호 또는 장제사등록번호			
동물병원(장제수) 개설여부	예, 아니오	마사회내 시설 임대희망 여부	예, 아니오

위 본인은 한국마사회 동물병원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귀 회가 운영하는 지역 내에서의 경주마 진료(장제)를 위한 개업수의사(개업장제사)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한 국 마 사 회 장 귀하

※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또는 장제사 등록증 사본
2. 경주마 진료 또는 장제 경력을 증빙하는 이력서 내지 경력증명서
3. 소정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3.12.17., 2004.3.26., 2014.8.13., 2014.11.21.>

고용수의사(장제사) 승인 신청서(제14조의2 관련)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의사 면허번호 (장제사 등록번호 및 등급)			
경력사항			

동물병원운영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위 사람을 고용수의사(장제사)로 사용코자 귀 회의 사전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한 국 마 사 회 장 귀하

※ 첨부서류

1. 수의사 면허증 또는 장제사 등록증 사본
2. 경력을 증빙하는 이력서 내지 경력증명서(필요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3.12.17., 2009.3.8., 2014.8.13., 2014.11.21.>

진료(장제) 허가신청서(제15조 관련)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진료(장제)경력		수의사면허번호 또는 장제사등록번호	
진료마 (장제마)	마 명 (마령및성별)		마 주 (조교사)	
	진료(장제)일시			
	사 유			

귀 회내 입사 경주마에 대한 진료(장제)를 실시코자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동물병원장 귀하